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에 관한 법제분석”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에 관한 법제분석”

양 태 건 (부연구위원)

법제분석 요약

개요▶▶▶

-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사이의 충돌 문제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도 생겨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생활의 수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는 것이 상징하듯 그러한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 현행 「주민등록법」은 본인 및 세대원에 의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신청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적 사유나 소송등의 수행상 필요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에 의한 사익적 사유로 제3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 제2항) 그러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등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행법 규정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주민등록정보 공개제도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당한 범위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에 대한 법제 분석을 수행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사유는 다른 사유(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희박하고 사익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공개의 이익간에 이익형량을 하거나 또는 양자의 이익의 조화로운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제1안은 개인정보보호의 이익을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6호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2안은 어느 하나의 이익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여 현행보다 채권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채권의 실현이라는 사익을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안은 주민등록정보를 제3자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현실적 대응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제3안은 제1안이나 제2안보다는 보장의 정도가 약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하나로서 본래 당연히 인정되고 누려야 할 권리인 고지받을 권리를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CONTENTS

I. 서론	4
II. 개인정보보호 일반론	5
1. 개인정보의 개념	5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원칙	8
III.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13
1. 연혁적 검토	13
2. 제도현황	16
3. 문제점	20
IV.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25
1. 외국의 입법례	25
2. 정당한 이해관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조화	30
3. 법령개정안	35
V. 결론	37
VI. 참고문헌	38
VII. 참고자료	39

01 / 서론

-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의 가치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를 둘러싼 요구들 사이의 대립도 종종 발생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 문제에 대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민등록제도 분야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생활의 수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는 것이 상징하듯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한 필요성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 현행 「주민등록법」은 본인 및 세대원에 의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신청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적 사유나 소송수행상 필요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에 의한 사익적 사유로 제3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 제2항) 그러나 개인정보의 중요성 증대에 비례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행법 규정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주민등록정보 공개제도에 대하여 법적 분석을 가하고 정당한 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II장에서 개인정보의 의의와 개인정보공개 일반원칙을 먼저 검토하고, 제III장에서 주민등록제도의 법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IV장에서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적절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02 / 개인정보보호 일반론

01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본래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념에서 발전하였다.¹⁾ 프라이버시 (privacy)는 사생활의 영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비공개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과 ‘정보’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정보’를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해방식이 있다.²⁾
 - 첫째, ‘개인’의 의미를 ‘개인적’ 또는 ‘사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적 정보 또는 사적인 정보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용어인 ‘개인적 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같은 용례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입장의 특징은 정보의 특성이 ‘개인적’ 또는 ‘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특성에 주목하는 입장이란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공적 성격의 정보가 아니라 사적 성격을 지닌 정보에 한정된다.
 - 둘째, ‘개인’의 의미를 ‘개인에 관한’으로 이해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는 개인에 관련된 것이면 일체의 것이 모두 포함되고 그것이 사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가 핵

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6쪽.

2) 이하의 내용은 권건보, 앞의 책, 7-12쪽 참조.



심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 입장의 특징은 정보의 주체에 주목하여 ‘개인’이라는 주체에 관련되는 일체의 정보를 다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다만 개인정보이면서도 사적 정보와 공적 정보는 공적·사회적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나 대외적 공개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이 두 입장은 그 보호범위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자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겠지만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현대사회에서는 취급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적인 성격의 정보가 아니라도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에 기한 ‘사적인 정보’라기 보다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파악되는 것이 보호의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³⁾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론과 입법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 개인정보를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해한다면, 여기에는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미 있게 개인정보를 논의하려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의미를 일정한 영역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권건보, 앞의 책, 12쪽.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학 교과서의 서술이나(예컨대 성낙인, 헌법학, 제16판, 법문사, 2016, 1241쪽.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놓고 볼 때 그러하다.





-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직접식별개인정보와 간접식별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⁵⁾ ① 직접식별개인정보는 그 정보 자체에 의해서 특정인의 신원을 직접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성명, 지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카드번호, 여권번호, 군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간접식별개인정보는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의 신원을 바로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주소,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가족관계, 신장, 병역관계기록,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해당한다.

0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우리 헌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⁶⁾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도 대체로 학계의 이론과 유사한 근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5) 권건보, 앞의 책, 19-20쪽.

6) 성낙인, 앞의 책, 1242쪽.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① 헌법 제17조는 소극적 권리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②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는 견해, ③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중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0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원칙

-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보호필요성에 부응하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방향으로 각각 의무와 권리를 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①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당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2항)는 의무를 부과하고, ②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정보주

7)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체에게는 열람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5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인정된다(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처리에 관한 동의권 및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의 정지·정정 요구권 등.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자의 권리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수집·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이나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한편 개인정보주체와 제3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까? 이것은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자와의 2자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자, 그리고 개인정보의 열람·공개를 청구하는 제3자와의 3자간 관계의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러한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개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간의 이익형량과 조화이다. 개인정보공개의 필요성(=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등의 기본권적 이익)은 모두 중요한 법적 이익으로서 일도양단적으로 어느 하나의 법익을 우선시하기에 쉽지 않다. 따라서 양자의 이익을 최대한 조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3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⁸⁾
 - ① 우선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다음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개인정보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익명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③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적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공익과 사익을 포함)과 그 공개로 인하여 입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되, 공개되는 경우에도 공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적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절차적 조치로는 공개정보의 활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정보의 관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과 청구의 목적 등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주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 이하의 내용은 권건보, 앞의 책, 179-180쪽 참조.



03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01 연혁적 검토

-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 10일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소간의 변경을 겪어 왔다. 그러나 대체적인 방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962년 최초 제정당시의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법문상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어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의 시행령(1962. 5. 12. 신규제정)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다가 30년만에 1991년 1월 14일 법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다만 세대원 이외의 자도 ① 공무상 필요한 경우와 ②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및 ③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1·1·14>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에 따라 1991년 4월 16일 제정된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법률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분을 보다 상세히 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1991년 4월 16일 영 제45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해당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예시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러던 것이 2001년 7월 18일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이 추가되었고 비교적 상세한 조항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신용질서의 확립”이란 악덕 채무자를 겨냥한 표현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당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7월 18일 영 제4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④ 법 제18조제2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8>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은 2006년 3월 24일 다시 개정되면서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들 내용은 종전보다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이미 2001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것이 법률 차원으로 끌어 올려진 것이어서 실제 운영상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1·1·14,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이 규정은 현재 법 제29조로 조문위지만 이동한 상태로 거의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02 제도현황

- 현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보다 상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하고 있어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법 제29조 제2항 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이 가능한 경우는 채무금액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개정 2016. 9. 2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버.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할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소송·비송 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나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과 함께 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4.12.31.>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근거 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 장 명의의 문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원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분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공단·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p>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p> <p>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p> <p>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p>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 자	별지 제7호서식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03 문제점

- 「주민등록법」의 연혁과 현행제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법 개정의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 개인의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일견 점차 확대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단





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1991년 주민등록법 시행령상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를 보다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이 법률로 격상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법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제3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다만 문제는 현행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가 공익적 이유로 주민등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데 비하여 제2호와 제4호는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런 사익적 요소가 주민등록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먼저 2011년 9월 19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기관에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⁹⁾ 그 중 23곳이 채권추심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4억1990만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는 채권추심업체에 건당 30원에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한 셈인데, 제공된 자료는 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받은 업체는 모두 317만여건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일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9) 경향신문,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았다”, 2011. 9. 20. 기사.



- 다음으로 2014년 2월 15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한 민간기관 가운데 22개의 채권추심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정부가 채권추심사의 추심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⁰⁾
- 그러나 정부기관에 의한 이러한 자료제공은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근거가 있다. 다만 그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정당한 것인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기관에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유념할 만 한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제기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에 의한 발급건수가 연간 거의 1000만건에 이르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등·초본이 개인정보 남용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발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¹¹⁾

신청자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현황

연도	계	본인 또는 세대원	수입자	가족관계 등록부상 가족	이해관계인*	기타
2016. 8.	62,906,075	53,614,915	722,731	1,232,127	6,200,798	1,135,504
2015	108,893,074	93,690,922	1,334,261	2,182,805	9,815,481	1,869,605
2014	110,190,042	95,166,368	1,365,899	2,269,532	9,457,108	1,931,135
2013	107,974,447	93,706,998	1,473,500	2,303,905	8,254,907	2,235,137
2012	105,391,193	92,512,956	1,648,795	2,431,596	6,121,909	2,675,937

*이해관계인: 채권·채무관계, 소송·비송·경매, 관계법령 등

- 따라서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다른 공익적 사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10) 연합뉴스, “백재현, “정부, 채권추심사에도 주민등록정보 제공””, 2014. 2. 16. 기사.

11) 행정자치부 제공자료.





- 이러한 법적 검토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형제자매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결혼에 의한 부부 관계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유대나 신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놓고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환경에서 함께 자라나지 않은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유대와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가족으로서의 의식이 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은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는 신분증명서 교부청구권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는 본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만, 형제자매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형제자매의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일으킨다면 이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4조의2 제1항),

현재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 또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은 위임을 통해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삼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를 통해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4호)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및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 제2항). 이처럼 형제자매의 경우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 조 제3항).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¹²⁾

12) 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0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01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이 제정되어 주민등록정보의 수집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에서 주민표에 기재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는 성명, 출생 연월일, 남녀의 성별, 주민이 된 연월일, 주소 및 주소변경일, 종전 주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주민표의 정보에 관해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본인등의 경우(제12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제12조의2) 이외에 제3자에 의한 경우(제12조의3)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2조의3(본인등 이외의 자의 신청에 의한 주민표의 사본등의 교부) ① 시정촌장은 전2조 규정의 것 이외에 당해 시정촌이 구비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에 관해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부터 주민표의 사본으로 기초증명사항(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리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7항에서도 같다)만이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로서 기초증명사항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게 당해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표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3. 전2호의 자 이외에 주민표의 기재사항을 이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이러한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상 규정은 과거 및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상의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와 다소 유사한 면이 있다.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채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다 일반적인 사유인 제3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도 있어 과거 우리 법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2003년) 및 개정(2009년)에 의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매우 엄격해졌다고 하지만 「주민기본대장법」 상 규정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

2. 독일

-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을 규율하는 법이 2원화되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연방주민등록법(Bundsmeldegesetz, BMG)」이 규율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연방주민등록증법(Personalausweisgesetz, PAuswG)」에서 주민등록증과 전자적 신분증명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 법률 모두에 시민인 제3자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율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공개법의 일반원칙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법으로서 연방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 관련된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데이터 수집, 가공 및 이용의 허용

(1)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이용은 오직 본 법 또는 기타의 법규정에서 허용하거나 지시한 경우 또는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다만 사적 부문으로의 데이터 전달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비공공기관으로의 데이터 전달

(1) 비공공기관으로의 개인관련 데이터 전달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허용된다.

1. ...(생략)... 또는
2. 데이터가 전달되는 제3자가 전달된 데이터를 알아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고 데이터주체가 데이터 전달을 배제할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 (2) 데이터 전달의 허용에 대한 책임은 전달하는 기관이 진다.
- (3) 위 제(1)항 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 전달기관은 데이터주체에게 그 데이터의 전달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주체가 다른 방식으로 그 전달 사실을 아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 또는 고지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방이나 주(州)의 복리에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데이터가 전달되는 제3자는 오직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전달되는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용해야 한다. 전달기관은 그에게 이 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수령자는 오직 전달된 목적에 부합하게 전달된 데이터를 처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달 기관은 이를 수령자에게 지적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가공 또는 이용은 위 제(1)항에 따라 전달이 허용되고 전달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허용된다.

- 독일의 경우에도 제3자가 정보를 알고 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를 소명함으로써 다른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공개를 배제할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채무관계’가 과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문만으로는 확실치 않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하나 특징적인 것은 개인관련 데이터를 사적 기관에게 전달하는 경우, 전달 기관이 데이터 주체에게 그 데이터의 전달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었음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3. 미국

-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없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별법에서 각각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대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서비스를 연방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Consent Based Social Security Number Verification (CBSV) Service)¹³⁾ 다만 이러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는 어디까지나 연방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한다.

1974년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 552a

.....

(b) 공개의 요건.

기관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정보주체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떤 교섭 수단에 의해서도 어느 개인이나 다른 기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07/07/2016-16095/consent-based-social-security-number-verification-cbsv-service>





(5) 정보수령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기관에 기록이 오직 통계적 조사 또는 보고 목적으로 이용될 것임을 알린 경우, 그리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경우

...

(8) 어느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상황을 소명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공개할 때 그러한 개인에게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에 그 공개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한편 연방 프라이버시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개인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 내지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나 어느 개인의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개인의 안전을 위해 그에 관한 기록(정보)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시에 그 개인(정보주체)에게 그러한 공개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U.S.C. § 552a (b)(8))

4 대만

- 대만에서는 신분관계의 생성변동에 관한 사항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주소지 정보까지 포함하는 호적제도가 존재한다. 「호적법」에서는 출생, 인지, 입양, 결혼, 전입·전출 사항에 관련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 이러한 호적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증서의 신청이 가능한 자의 범위에 대하여 「호적법」 제65조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호적등본 및 호적등기자료 열람 신청에 대한 처리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미이행 또는 채무미변제”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호적법」 제65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호적관리사무소에 호적자료의 열람이나 호적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호적등본 및 호적등기자료 열람 신청에 대한 처리원칙」

1. 호적등본 및 호적등기자료 열람 신청인은 다음과 같다.
 - (1) 당사자
 - (2) 이해관계인
 - (3) 위탁을 받은 자
2. 제1호 제2관의 “이해관계인”이란 당사자와 다음 각관중 하나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1) 계약미이행 또는 채무미변제
 - (2) 함께 회사점포의 주주 또는 동업자가 되고 또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
 - (3) 소송계속중인 양측 당사자
 - (4)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 (5) 호주와 호적구성원. 다만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기타 법률상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관계가 확실히 있는 경우

– 제2호 제1관의 사유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제29조 제2항 제6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제3관의 사유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9조 제2항 제2호)와 일부 유사하다.

02 정당한 이해관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조화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정보 제3자 공개범위와 비교적 유사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독일이나 미국은 그러한 구체적인 범위규정을 두지 않고 비공개와 공개의 필요성을 형량하거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개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적인 원칙 규정만에 의해 규율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이 공개범위를 정하고 허용하는 전자(일본과 대만)의 나라들과는 달리 후자(독일이나 미국)의 나라들은 개별적 형량 판단에 의해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





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추가해 두고 있다.

- 주민등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한정하는가의 문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그 공개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 ① 주민등록정보가 공적 목적을 위하여 설정·수집·처리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공개 내지 이용의 사회적 필요성이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개 내지 이용을 인정하기 쉬울 것이다.
 - ② 그에 반해 주민등록정보의 공개 내지 이용의 필요성이 사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우위에 놓으면서 양자간의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공개의 인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공개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해 주는 권리의 인정과 같은 절차적 보장 등이 그러하다.
-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재 소송제기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정보는 주로 주소지 관련 정보이다.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설정되고 나면 거의 불변인데 반하여, 주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소지 정보에 대한 요청은 소송제기나 채권추심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채권추심기관에 의하여 채무자를 강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3호(“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제4호(“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



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제7호(“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사유들은 모두 공익목적을 위한 이용으로서 주민등록정보의 설정 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그 이용이 설정 및 관리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제2항 제5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사유도 정보주체인 본인과의 가족법적 밀접성으로 인하여 그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엄밀히 공익목적은 아니고 사익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문제는 동법 제2항 제2호(“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다.
- 먼저 제2호의 “소송·비송사건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그 제도적 성격을 살펴볼 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재판제도의 운영을 위한 공적인 성격도 있다. 따라서 이 사유를 단순히 사익을 위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소보정등을 통해 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주소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소송의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권리의 인정 측면에서도 결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호에는 재판제도와 판결에 의한 집행(=경매를 포함)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의 공개가 인정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 내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라도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된다.

- 그러나 이와 달리 제6호의 채권·채무 관계는 사적인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공적 목적을 위해 설정된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해야 할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목적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이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라는 지위가 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보호가치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이고, 정보주체인 채무자로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자의 이익을 형량하거나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이 가능하다.

- 제1안은 채권·채무관계가 순전히 사적인 관계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주민등록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인데, 이에 의하면 주민등록정보주체인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주민등록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3자에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소송등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사실상 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대신에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제2호와 제6호는 거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 의하여 권리실현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언제나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권리실현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청구를 하는 등의 간단한 권리실현 방법의 이용이 제6호의 삭제에 의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은 있다.



- 제2안은 채권·채무관계가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비교법적 검토에 의하면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이나 대만의 「호적법」에도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정보공개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예에 따른다면 법 제29조 제2항 제6호도 일응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대로 채권금액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 3만원)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채권금액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요금 관련 채권을 다른 채권에 비해 그렇게 우대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관련 채권은 왜 통신요금 관련 채권에 비해 상대적 고액이어야 하는가? 따라서 통신요금 관련 채권인지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채권금액을 일률적으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그러한 기준금액 이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면서 기준금액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의 권리실현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3안은 현행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예에서와 같이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정보의 공개시 정보주체에게 그 공개 사실을 고지해주는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누려야 할 당연한 절차적 권리로서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정보를 공개하여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응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스스로 일정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장치는 제1안이나 제2안과 배타적인 안도 아니어서 제1안이나 제2안을 채택하더라도 아울러 보장될 수 있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현재의 기술발전 상태를 감안한다면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





현 행	개정안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p> <p>....</p> <p>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p> <p>...</p> <p><④항 신설></p>	<p>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이루어질 때에는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목적 및 열람·발급의 일시와 장소, 발급통수 등의 사실을 주민등록표의 본인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한다.</p>



05 / 결론

- 주민등록정보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제1급의 중요성을 지니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에 대한 법제 분석을 수행하여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사유는 다른 사유(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희박하고 사익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공개의 이익을 이익형량하거나 또는 두 이익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1안은 개인정보보호의 이익을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 제29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2안은 어느 하나의 이익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여 현행보다 채권금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채권의 실현을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안은 주민등록정보를 제3자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현실적 대응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제3안은 비록 제1안이나 제2안보다는 보장의 정도가 약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하나로써 본래 당연히 인정되고 누려야 할 권리인 고지받을 권리를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06 / 참고문헌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6.
- 성낙인, 헌법학, 제16판, 법문사, 2016.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013. 10.
- 박희영, “독일 연방주민등록법의 발효와 전자주민증”, 법제, 2011.01., 8-26쪽.
- 경향신문,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았다”, 2011. 9. 20. 기사.
- 연합뉴스, “백재현, “정부, 채권추심사에도 주민등록정보 제공””, 2014. 2. 16. 기사.
- 법령정보 검색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로앤비 : www.lawnb.com (법령연혁정보 검색에 좋음)
- 외국 법령정보 검색사이트
 - 독일 : www.gesetze-im-internet.de
 - 일본 : <http://law.e-gov.go.jp/>
 - 미국 : <https://www.law.cornell.edu>
 - 대만 : <https://law.moj.gov.tw>
 - 호정사(戶政司) 사이트 : www.ris.gov.tw



07 / 참고자료

1.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住民基本台帳法 (最終改正：平成二八年六月三日法律第六三号)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최종개정: 2014년 6월3일 법률 제63호)
<p>第七條 (住民票の記載事項) 住民票に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記載(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磁気ディスクをもつて調製する住民票にあつては、記録。以下同じ。)をする。</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氏名 二 出生の年月日 三 男女の別 四 世帯主についてはその旨、世帯主でない者については世帯主の氏名及び世帯主との続柄 五 戸籍の表示。ただし、本籍のない者及び本籍の明らかでない者については、その旨 六 住民となつた年月日 七 住所及び一の市町村の区域内において新たに住所を変更した者については、その住所を定めた年月日 八 新たに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定めた者については、その住所を定めた旨の届出の年月日(職権で住民票の記載をした者については、その年月日)及び従前の住所 八の二 個人番号(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五年法律第二十七号。以下「番号利用法」という。)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個人番号をいう。以下同じ。) 九 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た者については、その旨 十 国民健康保険の被保険者(国民健康保険法(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九十二号)第五条及び第六条の規定による国民健康保険の被保険者をいう。第二十八条及び第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である者については、その資格に関する事項で政令で定めるもの 十の二 後期高齢者医療の被保険者(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七年法律 	<p>제7조(주민표의 기재사항) 주민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출생 연월일 3. 남녀의 성별 4. 세대주에 관해서는 그러한 취지, 세대주가 아닌 자에 관해서는 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혈족관계 5. 호적의 표시. 다만 본적이 없는 자 및 본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 6. 주민이 된 연월일 7. 주소 및 하나의 시정촌의 구역내에서 새로 주소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정한 연월일 8. 새로 시정촌의 구역내 주소를 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정한 취지의 신고 연월일(직권으로 주민표의 기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연월일) 및 종전의 주소 8의2. 개인번호(「행정절차에서 측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규정한 개인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 10.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제28조 및 제31조 제3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그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에 정하는 것 10의2. 후기고령자의료의 피보험자(「고령자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p style="text-align: center;">住民基本台帳法 (最終改正：平成二八年六月三日法律第六三号)</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주민기본대장법〉 (최종개정: 2014년 6월3일 법률 제63호)</p>
<p>第八十号) 第五十条 及び第五十一条 の規定による後期高齢者医療の被保険者をいう。第二十八条の二及び第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である者については、その資格に関する事項で政令で定めるもの</p> <p>十一の三 介護保険の被保険者(介護保険法(平成九年法律第百二十三号) 第九条の規定による介護保険の被保険者(同条第二号に規定する第二号被保険者を除く。))をいう。第二十八条の三及び第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である者については、その資格に関する事項で政令で定めるもの</p> <p>十一 国民年金の被保険者(国民年金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四十一号) 第七条 その他政令で定める法令の規定による国民年金の被保険者(同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第二号被保険者及び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第三号被保険者を除く。))をいう。第二十九条及び第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である者については、その資格に関する事項で政令で定めるもの</p> <p>十一の二 児童手当の支給を受けている者(児童手当法(昭和四十六年法律第七十三号) 第七条の規定により認定を受けた受給資格者(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施設等受給資格者にあつては、同項第二号に掲げる里親に限る。))をいう。第二十九条の二及び第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については、その受給資格に関する事項で政令で定めるもの</p> <p>十二 米穀の配給を受ける者(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平成六年法律第百十三号) 第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により米穀の配給が実施される場合におけるその配給に基づき米穀の配給を受ける者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第三十条及び第三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については、その米穀の配給に関する事項で政令で定めるもの</p> <p>十三 住民票コード(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であつて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p> <p>十四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政令で定める事項</p>	<p>의한 후기고령자의료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제28조의2 및 제31조 제3항에 서 같다)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p> <p>10의3.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개호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동조 제2호에 규정한 제2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8조의3 및 제31조 제3항에서 같다)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p> <p>11.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국민연금법」 제7조 기타 정령에서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2호 피보험자 및 동항 제3호에 규정한 제3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9조 및 제31조 제3항에서 같다)인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p> <p>11의2.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아동수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동조 제2항에 규정한 시설등 수급자격자에 있어서는 동항 제2호에 기재된 양부모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 제3항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 수급자격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p> <p>12. 미곡의 배급을 받을 자(「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의 규정에 따라 미곡의 배급이 실시되는 경우에 그 배급에 기해 미곡의 배급을 받을 자로 정령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0조 및 제31조 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미곡의 배급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에서 정한 것</p> <p>13. 주민표 코드(번호, 기호 기타 부호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14. 전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에 정령에서 정한 사항</p>





住民基本台帳法 (最終改正：平成二八年六月三日法律第六三号)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최종개정: 2014년 6월3일 법률 제63호)
<p>第十二条 (本人等の請求による住民票の写し等の交付) 第十二条之二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請求による住民票の写し等の交付) 第十二条之三 (本人等以外の者の申出による住民票の写し等の交付)</p> <p>1 市町村長は、前二条の規定によるもののほか、当該市町村が備える住民基本台帳について、次に掲げる者から、住民票の写しで基礎証明事項(第七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及び第六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事項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七項において同じ。)のみが表示されたもの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で基礎証明事項に関するものが必要である旨の申出があり、かつ、当該申出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申出をする者に当該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p> <p>一 自己の権利を行使し、又は自己の義務を履行するために住民票の記載事項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者 二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提出する必要がある者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のほか、住民票の記載事項を利用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者</p> <p>2 市町村長は、前二条及び前項の規定によるもののほか、当該市町村が備える住民基本台帳について、特定事務受任者から、受任している事件又は事務の依頼者が同項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同項に規定する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が必要である旨の申出があり、かつ、当該申出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特定事務受任者に当該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前項に規定する「特定事務受任者」とは、弁護士(弁護士法人を含む。)、司法書士(司法書士法人を含む。)、土地家屋調査士(土地家屋調査士法人を含む。)、税理士(税理士法人を含む。)、社会保険労務士(社会保険労務士法人を含む。)、弁理士(特許業務法人を含む。)、海事代理士又は行政書士(行政書士法人を含む。)をいう。</p> <p>4 第一項又は第二項の申出は、総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12조(본인등의 청구에 의한 주민표의 사본등의 교부) 제12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청구에 의한 주민표의 사본등의 교부) 제12조의3(본인등 이외의 자의 신청에 의한 주민 표의 사본등의 교부)</p> <p>① 시정촌장은 전2조 규정에 것 이외에 당해 시정촌이 구비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에 관해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부터 주민표의 사본으로 기초증명사항(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리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7항에서도 같다)만이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로서 기초증명사항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게 당해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1. <u>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표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u>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3. 전2호의 자 이외에 <u>주민표의 기재사항을 이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u></p> <p>② 시정촌장은 전2조 및 전항의 규정의 의한 것 이외에 당해 시정촌이 구비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에 관하여 특정사무수입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뢰자가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같은 항에 규정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당해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특정사무수입자에게 당해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 전항에 규정한 「특정사무수입자」란 변호사(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사법서사(사법서사법인을 포함한다), 토지가옥조사사(토지가옥조사사법인을 포함한다), 세무사(세무사법인을 포함한다), 사회보험노무사(사회보험노무사법인을 포함한다), 변리사(특허업무법인을 포함한다), 해사대리사 또는 행정서사(행정서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은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住民基本台帳法 (最終改正：平成二八年六月三日法律第六三号)</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 <주민기본대장법> (최종개정: 2014년 6월3일 법률 제63호)</p>
<p>一 申出者(第一項又は第二項の申出をする者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氏名及び住所(申出者が法人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名称、代表者又は管理人の氏名及び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p> <p>二 現に申出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が、申出者の代理人であるときその他申出者と異なる者であるときは、当該申出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の氏名及び住所</p> <p>三 当該申出の対象とする者の氏名及び住所</p> <p>四 第一項に規定する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の利用の目的</p> <p>五 第二項の申出の場合にあつては、前項に規定する特定事務受任者の受任している事件又は事務についての資格及び業務の種類並びに依頼者の氏名又は名称(当該受任している事件又は事務についての業務が裁判手続又は裁判外手続における民事上若しくは行政上の紛争処理の手続についての代理業務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業務であるときは、当該事件又は事務についての資格及び業務の種類)</p> <p>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総務省令で定める事項</p> <p>5 第一項又は第二項の申出をする場合において、現に申出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は、市町村長に対し、個人番号カードを提示する方法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申出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が本人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6 前項の場合において、現に申出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が、申出者の代理人であるときその他申出者と異なる者であるときは、当該申出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は、市町村長に対し、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申出者の依頼により又は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申出の任に当たる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書類を提示し、又は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7 申出者は、第四項第四号に掲げる利用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基礎証明事項のほか基礎証明事項以外の事項(第七条第八号の二及び第十三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全部若しくは一部が表示された住民票の写し又は基礎証明事項のほか基礎証明事項以外の事項の全</p>	<p>1. 신청자(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p>2. 현재 신청을 맡아 하는 자가 신청자의 대리인인 경우 기타 신청자와 다른 자인 때에는 당해 신청을 맡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p> <p>3. 당해 신청의 대상이 되는 자의 성명 및 주소</p> <p>4. 제1항에 규정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증명서의 이용 목적</p> <p>5. 제2항의 신청의 경우에 전항에 규정한 특정사 무수입자가 수입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자격 및 업무의 종류와 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당해 수입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업무가 재판상 절차 또는 재판외의 절차에서 민사상 또는 행정상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대리 업무 기타 법령에 정한 업무인 때에는 당해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자격 및 업무의 종류)</p> <p>6. 앞의 각호에 열거된 것 이외에 총무성령에서 정한 사항</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재 신청을 맡아 하는 자는 시정촌장에 대해 개인번호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 기타 총무성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당해신청을 맡아 하는 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⑥ 전항의 경우에 현재 신청을 맡아 하고 있는 자가 신청자의 대리인인 때 기타 신청자와 다른 자일 때에는 당해 신청을 맡아 하는 자는 시정촌장에 대해 총무성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의뢰에 따라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신청을 맡아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p> <p>⑦ 신청자는 제4항 제4호에 기재된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증명사항 외에 기초증명사항 이외의 사항(제7호, 제8호의2 및 제13호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시된 주민표의 사본 또는 기초증명사항 외에 기초증명사항이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p>





住民基本台帳法 (最終改正：平成二八年六月三日法律第六三号)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최종개정: 2014년 6월3일 법률 제63호)
<p>部若しくは一部を記載した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が必要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申出をする際に、その旨を市町村長に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p> <p>8 市町村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第一項に規定する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に代えて、前項に規定する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p> <p>9 第一項又は第二項の申出をしようとする者は、郵便その他の総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第一項に規定する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の送付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p>	<p>부를 기재한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할 때 그 취지를 시정촌장에 표시할 수 있다.</p> <p>⑧ 시정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에 갈음하여 전항에 규정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⑨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우편 기타 총무성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한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p>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BDSG)	연방데이터보호법
<p>§ 16 Datenübermittlung an nicht-öffentliche Stellen</p> <p>(1)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an nicht-öffentliche Stellen ist zulässig, wenn</p> <p>1. sie zur Erfüllung der in der Zuständigkeit der übermittelnden Stelle 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und die Voraussetzungen vorliegen, die eine Nutzung nach § 14 zulassen würden, oder</p> <p>2. der Dritte,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Kenntnis der zu übermittelnden Daten glaubhaft darlegt und der Betroffene kein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m Ausschluss der Übermittlung hat. Das Übermitteln von besonderen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 3 Abs. 9) ist abweichend von Satz 1 Nr. 2 nur zulässig, wenn die Voraussetzungen vorliegen, die eine Nutzung nach § 14 Abs. 5 und 6 zulassen würden oder soweit dies zur Geltendmachung, Ausübung oder Verteidigung rechtlicher Ansprüche erforderlich ist.</p> <p>(2)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lässigkeit der Übermittlung trägt die übermittelnde Stelle.</p> <p>(3) In den Fällen der Übermittlung nach Absatz 1 Nr. 2 unterrichtet die übermittelnde Stelle den Betroffenen von der Übermittlung seiner Daten. Dies gilt nicht, wenn damit zu rechnen ist, dass er davon auf andere Weise Kenntnis erlangt, oder wenn die Unterrichtung die öffentliche Sicherheit gefährden oder sonst dem Wohle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Nachteile bereiten würde.</p> <p>(4) Der Dritte, an den die Daten übermittelt werden, darf diese nur für den Zweck verarbeiten oder nutzen, zu dessen Erfüllung sie ihm übermittelt werden. Die übermittelnde Stelle hat ihn darauf hinzuweisen. Eine Verarbeitung oder Nutzung für andere Zwecke ist zulässig, wenn eine Übermittlung nach Absatz 1 zulässig wäre und die übermittelnde Stelle zugestimmt hat.</p>	<p>제16조 비공공기관으로의 데이터 전달</p> <p>(1) 비공공기관으로의 개인관련 데이터 전달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허용된다.</p> <p>1. 전달하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이 법 제14조에 따른 이용이 허용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또는</p> <p>2. 데이터가 전달되는 제3자가 전달된 데이터를 알^아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u>정당한 이익이 있음</u>을 소명하고 데이터주체가 데이터 전달을 배제할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생략)</p> <p>(2) 데이터 전달의 허용에 대한 책임은 전달하는 기관이 진다.</p> <p>(3) 위 제(1)항 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 <u>전달기관은 데이터주체에게 그 데이터의 전달을 고지하여야</u> 한다. 다만 데이터 주체가 다른 방식으로 그 전달 사실을 아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 또는 고지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방이나 주(州)의 복리에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데이터가 전달되는 제3자는 <u>오직 목적 범위 안에</u> 서만 전달되는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용해야 한다. 전달기관은 그에게 이 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수령자는 오직 전달된 목적에 부합하게 전달된 데이터를 처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달 기관은 이를 수령자에게 지적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가공 또는 이용은 위 제(1)항에 따라 전달이 허용되고 전달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허용된다.</p>





3. 대만 〈호적법〉

戶籍法	호적법
<p>第四條 戶籍登記，指下列登記：</p> <p>一、身分登記：</p> <p>(一) 出生登記。</p> <p>(二) 認領登記。</p> <p>(三) 收養、終止收養登記。</p> <p>(四) 結婚、離婚登記。</p> <p>(五) 監護登記。</p> <p>(六) 輔助登記。</p> <p>(七) 未成年子女權利義務行使負擔登記。</p> <p>(八) 死亡、死亡宣告登記。</p> <p>(九) 原住民身分及民族別登記。</p> <p>二、初設戶籍登記。</p> <p>三、遷徙登記：</p> <p>(一) 遷出登記。</p> <p>(二) 遷入登記。</p> <p>(三) 住址變更登記。</p> <p>四、分(合)戶登記。</p> <p>五、出生地登記。</p> <p>六、依其他法律所為登記。</p> <p>第六十五條 本人或利害關係人得向戶政事務所申請閱覽戶籍資料或交付戶籍謄本；申請人不能親自申請時，得以書面委託他人為之。</p> <p>利害關係人依前項規定申請時，戶政事務所僅得提供有利害關係部分之戶籍資料或戶籍謄本。</p> <p>戶籍謄本之格式及利害關係人範圍，由中央主管機關定之。</p>	<p>제4조 호적등기는 아래 열거하는 등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분등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등기 (2) 인지등기 (3) 입양, 입양의 종료등기 (4) 결혼, 이혼등기 (5) 감호등기 (6) 보조등기 (7) 미성년자녀의 권리의무행사 부담등기 (8) 사망, 사망선고등기 (9) 원주민신분 및 민족별등기 2. 호적창설등기 3. 전입전출등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출등기 (2) 전입등기 (3) 주거지변경등기 4. 분호등기(합호등기) 5. 출생지등기 6. 다른 법률에 따라 하는 등기 <p>제65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호적관리사무소에 호적자료의 열람이나 호적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를 할 수 있다.</p> <p>전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관리사무소는 이해관계부분의 호적자료 또는 호적등본만을 제공하여야 한다.</p> <p>호적등본의 격식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중앙의 주무기관이 이를 정한다.</p>



申請戶籍謄本及閱覽戶籍登記資料處理原則	호적등본 및 호적등기자료 열람 신청에 대한 처리원칙
<p>一、戶籍謄本及閱覽戶籍登記資料之申請人:</p> <p>(一) 當事人。 (二) 利害關係人。 (三) 受委託人。</p> <p>二、第一點第二款所稱利害關係人，指與當事人具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p> <p>(一) 契約未履行或債務未清償。 (二) 同為公司行號之股東或合夥人，且為執行職務所必要。 (三) 訴訟繫屬中之兩造當事人。 (四) 當事人之配偶、直系血親。 (五) 戶長與戶內人口。但寄居人口，不在此限。 (六) 其他確有法律上權利義務得喪變更之關係。</p>	<p>1. 호적등본 및 호적등기자료 열람 신청인은 다음과 같다.</p> <p>(1) 당사자 (2) 이해관계인 (3) 위탁을 받은 자</p> <p>2. 제1호 제2관의 “이해관계인”이란 당사자와 다음 각관중 하나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p> <p>(1) 계약미이행 또는 채무미변제 (2) 함께 회사점포의 주주 또는 동업자가 되고 또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 (3) 소송계속중인 양측 당사자 (4)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5) 호주와 호적구성원. 다만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법률상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관계가 확실히 있는 경우</p>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6-21-⑤

주민등록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에 관한 법제분석

발행일 2016년 12월 20일

발행인 이 익 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